

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3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주민투표권자 연령의 하향 조정,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 「주민투표법」(이하 ‘법’이라 함)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새로이 반영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(안 제3조)
-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(안 제4조)
- 재외국민 거소신고 폐지에 따른 규정정비(안 제8조제1항, 안 제9조)
-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내용 추가, 통·리·반 단위 청구인서명부 작성 관련 단서 신설(안 제8조, 안 제10조제1항)
-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(안 제12조~제15조)
- 주민투표청구서 등 서식 정비(별지 제1호~제7호 서식)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른 띄어쓰기, 용어 등 정비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5조, 안 제7조, 안

제8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, 안 제11조, 안 제14조,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)

5. 검토의견

○ 금번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법 제5조제1항이 주민투표권을 확대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 것에 따라 안 제3조에서 19세 이상으로 한정했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삭제하고,
- 법 제7조제1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안 제4조에서 기존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앞으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법 제10조에서 종전에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하였던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방식을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는바,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안 제8조 단서를 신설하였고,
-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(이하 ‘심의회’라 함) 관련 규정인 법 제12조의2가 신설되어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. 이에 안 제12조~제15조에서 심의회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심의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그 임기, 심의회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정비하였음.

- 위 내용은 상위법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려는 본 조례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므로, 특별한 이견이 없음.
- 그밖에 별지 제1호~제7호의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(법제처, 2021. 12.)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잘못된 띄어쓰기를 바로잡고 용어 등을 알맞게 개정한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: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